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96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단

피 고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장

3. [redacted]시장

4. [redacted]시장

5.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7. 14.

판 결 선 고 2015. 8. 25.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1. 17. 한 취득세 8,588,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나.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1. 21. 한 취득세 4,681,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다.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1. 21. 한 취득세 7,777,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라.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1. 21. 한 취득세 2,415,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마. 피고 [redacted]시장이 2013. 12. 11. 한 취득세 1,340,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24조, 제26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하 '원고 공단'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 공단은 2011. 6. 29. 국민연금기금에서 [redacted]도로 주식회사(이하 '[redacted]도로'라 한다)의 전체 발행주식 92,000,000주 중 86%인 79,1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12. 11.부터 2014. 1. 21.까지 사이에, 원고 공단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의해 과점주주로서 [redacted]도로가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하 '이 사건 과세물건'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이 사건 각 처분 내역>

피고	처분일자	과세표준(원)	부과금액(원)	과세물건
피고 [redacted]시장	2014. 1. 17.	293,460,140	8,588,980	차량
피고 [redacted]시장	2014. 1. 21.	159,832,179	4,681,790	골프회원권
피고 [redacted]시장	2014. 1. 21.	265,740,160	7,777,670	골프회원권
피고 [redacted]시장	2014. 1. 21.	82,662,426	2,415,870	콘도미니엄 회원권
피고 [redacted]시장	2013. 12. 11.	46,147,428	1,340,370	콘도미니엄 회원권

라. 원고 공단은, 원고 공단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따른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한 간주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14. 3. 7.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공단의 주장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원고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물건은 국가가 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 공단은 국가와 독립된 법인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므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국민연금기금은 원고 공단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과세물건 또한 원고 공단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사건 과세물건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은 원고 공단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 공단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공단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상 간주취득 및 취득세 비과세규정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주체가 원고 공단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에는 원고 공단이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주체가 국가로 판단된다면,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주체가 국가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의 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따라 국민연금법 제24조, 제25조,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원고 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그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하여 '국고금'에 해당하고, 국가재정법 제1조, 제5조, 제62조 내지 85조 등에서는 기금이 국가재정에 포함됨을 전제로 국가의 기금 관리·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국고금'으로서 국가재정에 포함된다.

② 원고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원고 공단의 회계와 국민연금기금의 회계는 분리되어 있고(국민연금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참조),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예산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 대통령의 승인, 국회에의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에의 결산보고서 제출 등 정부 및 국회의 관리·통제를 받고 있다(국민연금법 제107조, 국가재정법 제66조, 제68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별도의 법인격 있는 원고 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 사건 주식 취득의 효과가 귀속되는 권리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국민연금기금의 법적 성격 및 관리·운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에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국가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으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규정한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25. 원고 공단의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공단으로부터 증권거래세 등을 징수하여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납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증권거래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고(2011누43036호), 이에 대한 영등포세무서장의 상고가 2013. 7. 11. 기각(2013두6497호)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한 것이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국가가 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

⑤ 피고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은 원고 공단의 재산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 공단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 공단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은 원고 공단이 국가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법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원고 공단 자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은 원고 공단이 아닌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고, 원고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는 국가가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 공단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이 국가가 주식을 취득한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국가의 취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김윤희

판사 김윤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국민연금법」 제25조 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국민연금법」 제25조 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을 위한 부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민연금법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한다.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7.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42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43조(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적립금·환부금(환부금)·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각종 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④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⑧ 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동항에 규정된 제출·협의 등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정부는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12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2.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끝.